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02-338-2890 f.counsel@sisters.or.kr)

제 목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도요청

날 짜 2023. 3. 14. (총 27쪽)

보 도 요 청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32년 동안 총 89,351건의 상담을 해왔으며, 매년 한 해 동안의 상담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달라지는 성폭력 관련 상담의 경향을 짚어봅니다.
4. 2022년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전체상담은 1,387건(537명)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 총 1,310건(478명)에 대한 기본 상담통계와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및 스토킹 유형 상담의 세부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5. 다음과 같이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을 보내드리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첨부]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27쪽)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I. 2022년 기본 상담 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1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0.8%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9%	2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5.6%가 남성, 이중 성인은 66.9%	3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5.9%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29.3%가 대리인 상담	3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간 37.2%, 강제추행 36.8%	4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20세~64세)와 고령(65세 이상)이 전체의 72.6%	5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2.0%	6
8. 피해자 지원내용	7

II. 2022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1.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9
1-1.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의 기본적인 특징: 전체 피해유형 중 강간(52.9%)이 가장 높고, 가해자는 모두 남성(100%)	
1-2.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친밀한관계(29.4%)가 가장 많아	
1-3. 고소 후 불송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아	
1-4. 불송치 처분의 이유: 피해자다음에 대한 통념 작용이 32.4%로 가장 높아	
1-5.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결정 여부: 이의신청을 한 100% 중 72.2%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명령을 결정	
1-6.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 검찰의 기소율은 11.1%에 불과	
1-7. 피해자가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시점은 불송치 처분 후가 44.1%로 가장 많고, 주로 법률 지원을 요청	
2. 스토킹피해 상담 세부통계 유형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17
2-1. 스토킹 피해자 성별-연령별: 91.2%가 여성, 82.4%는 성인여성	
2-2. 스토킹 가해자 성별-연령별: 82.4%가 남성, 75%가 성인남성	
2-3. 스토킹 피해 상담 의뢰인별: 피해자 직접 상담 72.1%, 대리인 상담은 26.5%	
2-4.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 전/현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직장 내 관계, 동네사람 등 여타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도 늘어나	
2-5. 스토킹 피해 시 동반피해 여부: 다른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70.6%. 동반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 협박-위협, 찾아오기, 주변인 괴롭힘 순	
2-6. 스토킹 피해 상세 내용	
2-7.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은 1개월 미만부터 5년 이상 최대 15년까지	
2-8. 스토킹 피해 상담 이전 대응 방법	

III. 결론	25
---------	----

I. 2022년 기본 상담 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89,351건의 상담을 해왔다. 2022년 전체상담은 1,387건(537명)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310건(478명)로 전체상담명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9.0%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건수는 초기상담만을 산정한 단위고 횟수는 중복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단위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상담 및 지원체계를 안정화 과정에 있으며, 지속지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초기상담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 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 상담을 포함한 건수 파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정 방식을 추가하였고, 좀 더 쉽게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단위를 수정했다. 기존 단위 '건수'는 '명수'로, 중복되는 지속 상담을 포함한 단위 '횟수'의 경우 '건수'로 변경하였다. 명수에 대한 산정 값은 상담명수(초기상담명수+지속상담명수)로 괄호에 추가로 기재했다. 괄호 값의 경우 기존의 산정 값이 없으므로 최근 3년 산정 값을 기재했다.

표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도	상담건수	상담명수(A)	성폭력상담명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844)	715(780)	91.8
2021	1,415	595(701)	537(639)	90.3
2022	1,387	537(622)	478(562)	89.0
총	89,351	58,746	49,570	85.6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0.8%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9%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명수 478명 중 434명(90.8%)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9.2% 중 남성 피해자는 6.9%이고, 피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상담(미상)은 2.3%를 차지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306명(64.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성인여성의 비율이 2021년 61.3%에서 64.0%로 약간 늘었고 여성 청소년(2021년 13.0% → 2022년 8.2%)과 여성 어린이(2021년 9.7% → 2021년 9.2%) 피해자의 비율이 다소 줄었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 (0.4)	306 (64.0)	39 (8.2)	44 (9.2)	11 (2.3)	32 (6.7)	434 (90.8)
남	0 (0.0)	19 (4.0)	7 (1.5)	4 (0.8)	3 (0.6)	0 (0.0)	33 (6.9)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상	0 (0.0)	2 (0.4)	1 (0.2)	2 (0.4)	0 (0.0)	6 (1.3)	11 (2.3)

총계	2 (0.4)	327 (68.4)	47 (9.8)	50 (10.5)	14 (2.9)	38 (7.9)	478 (100.0)
----	------------	---------------	-------------	--------------	-------------	-------------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5.6%가 남성, 이중 성인은 66.9%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478명 중 409명(85.6%)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20명(6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이 7.9%(38명)로 높게 집계되었다.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0 (0.0)	15 (3.1)	1 (0.2)	0 (0.0)	0 (0.0)	1 (0.2)	17 (3.6)
남	14 (2.9)	320 (66.9)	29 (6.1)	6 (1.3)	1 (0.2)	39 (8.2)	409 (85.6)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1 (0.2)
미상	0 (0.0)	12 (2.5)	0 (0.0)	1 (0.2)	0 (0.0)	38 (7.9)	51 (10.7)
총계	14 (2.9)	347 (72.6)	30 (6.3)	7 (1.5)	1 (0.2)	79 (16.5)	478 (10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 전체 상담 중 69.5%가 본인이 직접 상담, 29.3%가 대리인 상담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명수는 478명 중 332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명수는 140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예년과 비교하여 당사자(2021년 65.9% → 2022년 69.5%)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대리인(2021년 32.6% → 2022년 29.3%)로 감소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명수가 76명(1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명(%)>

본인	대리인 140(29.3%)									본인/대리인 (동석)	미상	전체상담 명수
	가족· 친인척	데이트 상대	아웃· 친구	직장	학교· 학원	변호사	공공 및 유관기관	시민사 회단체	기타			
332 (69.5)	76 (15.9)	7 (1.5)	16 (3.3)	13 (2.7)	4 (0.8)	0 (0.0)	13 (2.7)	3 (0.6)	8 (1.7)	6 (1.3)	0 (0.0)	478 (100.0)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간 37.2%, 강제추행 36.8%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간이 178명(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제추행 피해 상담 역시 176명(36.8%)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9년 31.3%, 2020년 34.4%, 2021년 35.9%에 이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46명(9.6%)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의 비율보다 강제추행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19세-14세)과 어린이(13세-8세)의 경우는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았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0 (0.0)	2 (0.4)	2 (0.4)	1 (0.2)	0 (0.0)	0 (0.0)	5 (1.0)	178 (37.2)
	강간 (유사강간포함)	0 (0.0)	85 (17.8)	21 (4.4)	14 (2.9)	5 (1.0)	12 (2.5)	137 (28.7)	
	준강간	1 (0.2)	27 (5.6)	1 (0.2)	1 (0.2)	0 (0.0)	2 (0.4)	32 (6.7)	
	강간미수	0 (0.0)	2 (0.4)	0 (0.0)	1 (0.2)	0 (0.0)	1 (0.2)	4 (0.8)	
강제 추행	강제추행	1 (0.2)	122 (25.5)	13 (2.7)	23 (4.8)	7 (1.5)	5 (1.0)	171 (35.8)	176 (36.8)
	준강제 추행	0 (0.0)	5 (1.0)	0 (0.0)	0 (0.0)	0 (0.0)	0 (0.0)	5 (1.0)	
성희롱		0 (0.0)	41 (8.6)	3 (0.6)	2 (0.4)	0 (0.0)	0 (0.0)	46 (9.6)	
통신매체이용음란		0 (0.0)	5 (1.0)	1 (0.2)	1 (0.2)	0 (0.0)	0 (0.0)	7 (1.5)	

카메라이용촬영	0 (0.0)	16 (3.3)	3 (0.6)	1 (0.2)	0 (0.0)	2 (0.4)	22 (4.6)
스토킹	0 (0.0)	9 (1.9)	2 (0.4)	0 (0.0)	0 (0.0)	2 (0.4)	13 (2.7)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0 (0.0)	2 (0.4)	0 (0.0)	0 (0.0)	0 (0.0)	0 (0.0)	2 (0.4)
미상	0 (0.0)	11 (2.3)	1 (0.2)	6 (1.3)	2 (0.4)	14 (2.9)	34 (7.1)
총계	2 (0.4)	327 (68.4)	47 (9.8)	50 (10.5)	14 (2.9)	38 (7.9)	478 (10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20세~64세)와 고령(65세 이상)이 전체의 72.6%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347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청소년(19세-14세) 가해자 30명(6.3%), 고령(65세 이상) 가해자 14명(2.9%), 어린이(13세-18세) 7명(1.5%)순이다.

표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피해유형	가 해 자 연 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미수	특수강간	0 (0.0)	1 (0.2)	0 (0.0)	0 (0.0)	0 (0.0)	4 (0.8)	178 (37.2)
	강간 (유사강간포함)	5 (1.0)	96 (20.1)	10 (2.1)	1 (0.2)	0 (0.0)	25 (5.2)	
	준강간	0 (0.0)	28 (5.9)	0 (0.0)	0 (0.0)	0 (0.0)	4 (0.8)	
	강간미수	0 (0.0)	3 (0.6)	0 (0.0)	0 (0.0)	0 (0.0)	1 (0.2)	
강제추행	강제추행	8 (1.7)	128 (26.8)	14 (2.9)	4 (0.8)	1 (0.2)	16 (3.3)	176 (36.8)
	준강제추행	0 (0.0)	5 (1.0)	0 (0.0)	0 (0.0)	0 (0.0)	0 (0.0)	
성희롱	1 (0.2)	41 (8.6)	2 (0.4)	1 (0.2)	0 (0.0)	1 (0.2)	46 (9.6)	
통신매체이용음란	0 (0.0)	5 (1.0)	0 (0.0)	1 (0.2)	0 (0.0)	1 (0.2)	7 (1.5)	
카메라이용촬영	0 (0.0)	14 (2.9)	2 (0.4)	0 (0.0)	0 (0.0)	6 (1.3)	22 (4.6)	

스토킹	0 (0.0)	10 (2.1)	1 (0.2)	0 (0.0)	0 (0.0)	2 (0.4)	13 (2.7)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0 (0.0)	2 (0.4)	0 (0.0)	0 (0.0)	0 (0.0)	0 (0.0)	2 (0.4)
미상	0 (0.0)	14 (0.0)	1 (2.9)	0 (0.2)	0 (0.0)	19 (4.0)	34 (7.1)
총계	14 (2.9)	347 (72.6)	30 (6.3)	7 (1.5)	1 (0.2)	79 (16.5)	478 (10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2.0%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92명(82.0%)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3명(21.5%)으로 성인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작년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35명(7.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1명(2.3%)으로 가장 높았고, 친족 관계에 의한 피해가 7명(1.5%)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친족 관계에 의한 피해 총 58명(12.1%) 중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의 경우 각각 28명(5.9%), 11명(2.3%)로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간순대로 통계를 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에는 5.4%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 14.2%로 증가했다. 2022년은 13.0%로 예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0%대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인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미상의 경우 58명(12.1%)으로 예년 45명(8.4%)에 비해 약 3.7% 증가했다. 이는 다른 관계 유형 중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로 보인다.¹⁾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연령	유형	아는 사람 392(82.0)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62(13.0)		직장	친밀한 관계	온라인	이웃 사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학 원	주변 인의 지인	동호 회				기타
		친족	친족외 인척													
2019년		78 (8.6)	9 (1.0)	276 (30.3)	94 (10.3)	24 (2.6)	92 (10.1)	41 (4.5)	87 (9.5)	33 (3.6)	28 (3.1)	31 (3.4)	6 (0.7)	43 (4.7)	70 (7.7)	912 (100.0)
2020년		59	43	215	86	32	44	33	50	20	33	15	7	40	38	715

1) 아래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산정 값으로, 별도로 산정한 결과 관계 미상 58명 중 21명(36.2%)이 대리인 상담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8.3)	(6.0)	(30.1)	(12.0)	(4.5)	(6.2)	(4.6)	(7.0)	(2.8)	(4.6)	(2.1)	(1.)	(5.6)	(5.3)	(100.0)
2021년	76 (14.2)	9 (1.7)	138 (25.7)	55 (10.2)	29 (5.4)	45 (8.4)	19 (3.5)	34 (6.3)	17 (3.2)	18 (3.4)	10 (1.9)	2 (0.4)	40 (7.4)	45 (8.4)	537 (100.0)
2022년	58 (12.1)	4 (0.8)	105 (22.0)	40 (8.4)	25 (5.2)	44 (9.2)	20 (4.2)	34 (7.1)	15 (3.1)	22 (4.6)	14 (2.9)	11 (2.3)	28 (5.9)	58 (12.1)	478 (100.0)
고령 (65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0 (0.0)	1 (0.2)	2 (0.4)						
성인 (20세-64세)	8 (1.7)	2 (0.4)	103 (21.5)	35 (7.3)	18 (3.8)	30 (6.3)	16 (3.3)	18 (3.8)	9 (1.9)	19 (4.0)	14 (2.9)	10 (2.1)	23 (4.8)	22 (4.6)	327 (68.4)
청소년 (19세-14세)	7 (1.5)	1 (0.2)	1 (0.2)	3 (0.6)	7 (1.5)	6 (1.3)	2 (0.4)	11 (2.3)	3 (0.6)	1 (0.2)	0 (0.0)	0 (0.0)	1 (0.2)	4 (0.8)	47 (9.8)
어린이 (13세-8세)	28 (5.9)	1 (0.2)	0 (0.0)	0 (0.0)	0 (0.0)	4 (0.8)	0 (0.0)	5 (1.0)	3 (0.6)	2 (0.4)	0 (0.0)	0 (0.0)	2 (0.4)	5 (1.0)	50 (10.5)
유아 (7세 이하)	11 (2.3)	0 (0.0)	0 (0.0)	0 (0.0)	0 (0.0)	1 (0.2)	0 (0.0)	2 (0.4)	14 (2.9)						
미상	4 (0.8)	0 (0.0)	1 (0.2)	2 (0.4)	0 (0.0)	2 (0.4)	2 (0.4)	0 (0.0)	0 (0.0)	0 (0.0)	0 (0.0)	1 (0.2)	2 (0.4)	24 (5.0)	38 (7.9)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22년 한 해 동안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성폭력상담건수(1,310건)를 기준으로 중복 집계 하였다.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65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625건(47.7%)로 많았다. 예년의 경우 심리정서적지원(48.1%), 법적지원(35.5%) 순으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2022년 상담일지 개편으로 인한 지원내용 분류 방법의 변화와 관련된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피해자 지원 요청 내용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 상담일지 양식수정 및 지원내용의 분류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다. 변경된 지원내용으로는 '정보제공 및 상담원의 의견개진'(이하 정보제공), '공론화 지원', '사례회의' 등이다. 정보제공의 경우, 기존에는 간단한 법적절차 안내, 유관기관 및 쉼터 전화번호 안내 등 단순 정보제공도 각각 법률지원과 기관연계지원으로 분류해왔으나, 2022년부터 정보제공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심리·정서지원으로 분류했던 상담원 의견이나 단순정보 전달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으로 통합하였다. 피해자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실제 지원 방법에서도 비율이 늘고 있는 공론화 지원도 별도로 분류하게 되었고, 지원내용에서 누락되기 쉬웠던 사례회의 등을 통한 지원 방식도 추가하여 다양화된 지원 내용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

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연관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으로는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내 신고 등의 지원을 나타낸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 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기관을 본 상담소에서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이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안내, 개인적 합의 관련 상담 등을 나타낸다.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건(%)>

법적 지원	법적 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	심리·정서 지원	기관연계		공론화 지원	기타	전체 지원수
		의료 기관 연계·동행	의료비 지원 관련 상담	의료 기관 연계			쉼터	유관 기관			
312 (23.8)	8 (0.6)	2	114	20	659 (50.3)	625 (47.7)	2	11	10 (0.8)	36 (2.7)	1,799 (100.0)
		136 (10.4)					13 (1.0)				

II. 2022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고소인의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수사절차로 인해 초기단계에서부터 '불송치'라는 넘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약 2년간 성폭력 사건의 경찰 수사 흐름을 살펴보고자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상담을 세부분석하였다.

한편,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톱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어, 스톱킹을 폭력피해로 인정받고, 일상을 압도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22년 "신당역 스톱킹 살인 사건"이 보도되면서 상담 창구를 통해 수많은 스톱킹 피해자들이 더욱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의 스톱킹 피해 상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1.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²⁾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수사가 종결되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것이다.

고소인의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수사절차로 인해 초기단계에서부터 '불송치'라는 넘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체감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할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이 모든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따른 송치 의미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건의 현황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약 2년간 성폭력 사건의 경찰 수사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부통계에서는 초기상담, 지속상담 여부와 상관없이 한 해 동안 불송치된 성폭력사건 내담자 인원(명)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1.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의 기본적인 특징 : 전체 피해유형 34명(100%) 중 강간(18명, 52.9%)이 가장 높고, 가해자는 모두 남성(34명, 100%)

기초통계에서의 피해유형은 강제추행(35.8%)>강간(28.7%)>준강간(35.8%)순의 피해가 보고되는 반면, 불송치된 사례의 피해 유형의 경우 강간(52.9%)>준강간(20.6%)>강제추행(17.6%) 순으로 강간의 피해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강간 피해의 경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최협의설'이 존재한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집중하여 강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된 사례 또한 강간 피해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9 불송치 사례 피해자 성별·피해유형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촬영	모욕	협박	총계
여	18 (52.9)	7 (20.6)	6 (17.6)	1 (2.9)	1 (2.9)	1 (2.9)	34 (100.0)
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18 (52.9)	7 (20.6)	6 (17.6)	1 (2.9)	1 (2.9)	1 (2.9)	34 (100.0)

<표 10 불송치 사례 성폭력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체피해자의 34명(100%) 전체가 여성 피해자이며, 이중 성인(20세 이상 65세 미만) 피해자가 29명(85.3%)를 차지한다.

표 10 불송치 사례 성폭력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총계
여	1 (2.9)	29 (85.3)	1 (2.9)	1 (2.9)	2 (5.9)	34 (100.0)
남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총계	1 (2.9)	29 (85.3)	1 (2.9)	1 (2.9)	2 (5.9)	34 (100.0)

<표 11 불송치 사례 성폭력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가해자는 34명(100%) 모두 남성이며, 성인(20세 이상 65세 미만) 31건(91.2%), 고령 3건(8.8%)이다.

표 11 불송치 사례 성폭력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64세)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총계
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남	3 (8.8)	31 (91.2)	0 (0.0)	0 (0.0)	0 (0.0)	0 (0.0)
총계	3 (8.8)	31 (91.2)	0 (0.0)	0 (0.0)	0 (0.0)	0 (0.0)

1-2.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 친밀한 관계(10명, 29.4%)가 가장 많아

기초통계에서 성폭력피해자·가해자 관계를 보면 직장 및 공동체(22.0%)>친족 및 인척(12.1%)>친밀한 관계(8.4%) 순으로 아는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12. 불송치 사례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도 친밀한관계(29.4%)>직장 및 공동체(26.5%)>지인(17.6%) 순 아는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은데, 이는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밀접한 관계에 놓였던 관계일수록 불송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심실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면 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반면,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위력, 신뢰 관계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2 불송치 사례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명(%)>

친족 (8.5)		친밀한 관계 (29.4)		직장 및 공동체 (26.5)				서비스 제공자	지인	온라 인	모르 는 사람	총계
친 부모	조 부모	전 데이 트상 대	현 데이 트상 대	고용 주	상사	거래 처	고객					

2	1	4	6	4	1	2	2	2	6	3	1	34
(5.9)	(2.9)	(11.8)	(17.6)	(11.8)	(2.9)	(5.9)	(5.9)	(5.9)	(17.6)	(8.8)	(2.9)	(100.0)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자세한 관계를 살펴보면 친밀한관계가 10명(29.4%)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13>은 가해자가 친밀한관계(전·현데이트상대)인 경우의 피해유형을 나타내는데, 이중 강간이 5명(5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데이트폭력의 성격을 띤 성폭력의 경우 보통 기존 관계를 기반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 강간되는 가해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가 아닌 폭행·협박 존재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가해자가 친밀한관계(전·현데이트상대)인 경우 피해유형

<단위: 명(%)>

강간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총계
5 (50.0)	3 (30.0)	1 (10.0)	1 (10.0)	10 (100.0)

1-3. 성폭력 사건 고소 후 불송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이 12명(35.3%)이 가장 많아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1항에 따르면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14. 성폭력 사건 고소 후 불송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고소 후 불송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이 12명(35.3%)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기간은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바와 달리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부의 사례도 3명(8.8%)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수사가 지연되는 명확한 이유를 수사관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해 답답함과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표 14 성폭력 사건 고소 후 불송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위: 명(%)>

소요기간 피해유형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미파악	총계
강간	4 (11.8)	6 (17.6)	2 (5.9)	1 (2.9)	5 (14.7)	18 (52.9)

준강간	0 (0.0)	2 (5.9)	3 (8.8)	1 (2.9)	1 (2.9)	7 (20.6)
강제추행	0 (0.0)	3 (8.8)	0 (0.0)	1 (2.9)	2 (5.9)	6 (17.6)
카메라 이용촬영	0 (0.0)	0 (0.0)	1 (2.9)	0 (0.0)	0 (0.0)	1 (2.9)
모욕	0 (0.0)	1 (2.9)	0 (0.0)	0 (0.0)	0 (0.0)	1 (2.9)
협박	0 (0.0)	0 (0.0)	1 (2.9)	0 (0.0)	0 (0.0)	1 (2.9)
총계	4 (11.8)	12 (35.3)	7 (20.6)	3 (8.8)	8 (23.5)	34 (100.0)

1-4. 불송치 처분의 이유: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용이 32.4%로 가장 높아

불송치 처분된 34명(100%)의 사건에 대한 처분 이유를 <표15. 불송치 처분의 이유(중복)>로 나타내 보았는데(49건/144.1%), 먼저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용'이 11건(32.4%)을 차지했다.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바로 피해장소를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피해 전, 후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이 불송치의 이유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통념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라는 편견을 강화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도 하며, 이를 가해자가 공격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통념과 수사기관의 인식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신빙성 의심으로 이어지는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의심'이 불송치 처분의 이유 중 9건(26.5%)을 차지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주요하게 다투게 된다. 그런데 양쪽의 진술이 상반되고 각자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성을 낮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음'도 9건(26.5%)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동반 유무 또는 유형력의 정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현실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건(5.9%)를 차지한 준강간의 경우도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성폭력피해 시 완전히 기억을 잃었다면 피해 당시 상황 진술에 어려움을 느끼고, 반대로 기억나는 일부라도 진술을 하며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이렇듯 강간과 준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상호합의하에 성적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한 성적동의를 이뤄졌는지 등 다루지는 않고 있는 등의 법적 한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이 5건(14.7%),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2건(5.9%)등 다양한 불송치 처분의 이유가 있었다.

표 15 불송치 처분의 이유(중복)

<단위: 건(%)>

불송치 이유	피해유형	강간	준강간	강제 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모욕	협박	총계
1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용	당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하지 않음	6 (17.6)	3 (8.8)	1 (2.9)	1 (2.9)	0 (0.0)	0 (0.0)	11 (32.4)
	피해자가 거부 의사 밝히지 않음							
	피해 전후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음							
2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의심	피의자와 진술이 상반되며 진술을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 없음	5 (14.7)	2 (5.9)	2 (5.9)	0 (0.0)	0 (0.0)	0 (0.0)	9 (26.5)
2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음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	7 (20.6)	2 (5.9)	0 (0.0)	0 (0.0)	0 (0.0)	0 (0.0)	9 (26.5)
4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0 (0.0)	0 (0.0)	3 (8.8)	0 (0.0)	0 (0.0)	2 (5.9)	5 (14.7)
5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입증 어려움(준강간 해당)		0 (0.0)	2 (5.9)	0 (0.0)	0 (0.0)	0 (0.0)	0 (0.0)	2 (5.9)
6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 (2.9)	1 (2.9)	0 (0.0)	0 (0.0)	0 (0.0)	0 (0.0)	2 (5.9)
7 공소시효 도과		1 (2.9)	0 (0.0)	0 (0.0)	0 (0.0)	0 (0.0)	0 (0.0)	1 (2.9)
8 미파악		5 (14.7)	1 (2.9)	4 (11.8)	0 (0.0)	0 (0.0)	0 (0.0)	10 (29.4)
총계		25 (73.5)	11 (32.4)	10 (29.4)	1 (2.9)	0 (0.0)	2 (5.9)	49 (144.1)

1-5.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결정 여부: 이의신청을 한 18명(100%) 중 13명(72.2%)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명령을 결정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고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수사자료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표16.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명령 결정여부>에 따르면 이의신청 진행이 확인된 18명(100%) 중 13명(72.2%)의 사례가 검찰로 송치 후 보완수사 명령으로 다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다. 기타 4명(22.2%)은 보완수사명령 결정 여부가 미파악 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이다.

표 16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명령 결정여부

<단위: 명(%)>

검찰처리 피해유형	보완수사명령	기각	기타	총계
강간	6 (33.3)	1 (5.6)	3 (16.7)	10 (55.6)
준강간	6 (33.3)	0 (0.0)	1 (5.6)	7 (38.9)
강제추행	1 (5.6)	0 (0.0)	0 (0.0)	1 (5.6)
총계	13 (72.2)	1 (5.6)	4 (22.2)	18 (100.0)

1-6.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 검찰의 기소율은 2명(11.1%)에 불과

<표17. 이의신청 후 기소여부>이의신청이 확인된 18명(100%)의 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7명(38.9%)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이의신청 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2명(11.1%)에 불과했다. 기타 9명(50.0%)의 경우 아직 검찰 수사 중이거나 결과가 미파악된 사건이다.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이유를 살펴보면 불송치 처분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7 이의신청 후 기소여부

<단위: 명(%)>

기소여부 피해유형	불기소	기소	기타	총계
강간	3 (16.7)	2 (11.1)	5 (27.8)	10 (55.6)
준강간	3	0	4	7

	(16.7)	(0.0)	(22.2)	(38.9)
강제추행	1 (5.6)	0 (0.0)	0 (0.0)	1 (5.6)
총계	7 (38.9)	2 (11.1)	9 (50.0)	18 (100.0)

1-7. 피해자가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시점과 요청사항 : 불송치 처분 후가 15명 (44.1%)으로 가장 많고, 주로 법률지원을 요청

<표 18 피해자가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시점>에 따르면 불송치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상담시점을 살펴보면 불송치 후가 15명(4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불송치 처분은 피해자에게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뒤이어 불기소 후 8명(23.5%), 고소 후 7명(20.6%) 순이다.

표 18 피해자가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시점

<단위: 명(%)>

고소 전	고소 후	불송치 후	이의신청 후	불기소 후	총계
3 (8.8)	7 (20.6)	15 (44.1)	1 (2.9)	8 (23.5)	34 (100.0)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소에 요청한 내용을 <표19.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소에 요청한 지원내용(중복)>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 요청내용 40건(100%) 중 법률지원이 29건(85.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요청하는 법률지원의 내용은 주로 불복 절차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법률상담, 의견서 제출, 사선변호사 추천 등이다. 심리정서적지원 8건(23.5%)는 법적대응과정에서 야기되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 중 2명은 고소부터 수사과정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공론화는 3건(7.5%)은 공론화를 통해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바라는 경우이다.

표 19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소에 요청한 지원내용(중복)

<단위: 건(%)>

법률지원	심리정서적지원	공론화	총계
29 (85.3)	8 (23.5)	3 (8.8)	40 (117.6)

2. 스토킹피해 상담 세부통계 유형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본 상담소는 2016년 상담통계 중 세부통계로 스토킹 피해 상담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스토킹 피해는 범칙금 8만원의 경범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나 권리 보장이 요원했고, 스토킹에서 살인, 폭행,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당시 본 상담소를 포함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했다³⁾.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래로 스토킹을 폭력피해로 인정받고, 일상을 압도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보도되면서 상담창구를 통해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더욱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스토킹 피해 상담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통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종전의 상담통계 데이터 추출 방식인 대표 유형⁴⁾과 1차 상담 일지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상담의 특성을 통계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표유형을 포함하여 동반피해 유형 중 스토킹 피해가 확인된 상담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1차 상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속지원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확인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2022년 한해동안 스토킹 피해를 상담한 피해자의 수는 스토킹 피해 상담을 유형화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스토킹 피해상담 세부통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개년 동안 본 상담소에서 스토킹 피해를 상담한 68명 133회의 상담일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⁵⁾.

2-1. 스토킹 피해자 성별·연령별: 91.2%가 여성, 82.4%는 성인여성

<표 20 최근3년(2020-2022) 스토킹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스토킹 피해 상담 사례 총 68명 중 62명(91.2%)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 중 56명(82.4%)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여성이었다. 이는 스토킹 피해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2014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 주관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자료집 참조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sisters.or.kr/data/report/95>)

4) 본 상담소에서는 상담일지 작성 시, 많은 동반 피해 중 피해자가 주되게 호소하는 피해를 “대표 유형”으로 기입하게 되는데, 스토킹 피해는 특히나 동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스토킹 피해만을 주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표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 자체가 적었다. 따라서 본 세부통계에서는 동반피해로 확인된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체크된 모든 상담일지를 기초 데이터로 삼아 분석하였다.

5) 본 세부통계 중 비교표에 2020년부터 2022년 스토킹 피해상담 분석 내용은 최근3년(2020-2022)라고 표기하겠다.

표 20 최근3년(2020-2022) 스토킹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65세 미만)	청소년 (14세이상 20세 미만)	미상	총계
여	56 (82.4)	2 (2.9)	4 (5.9)	62 (91.2)
남	4 (5.9)	1 (1.5)	0 (0)	5 (7.4)
미상	0 (0)	0 (0)	1 (1.5)	1 (1.5)
총계	60 (88.2)	3 (4.4)	5 (7.4)	68 (100)

2-2. 스토킹 가해자 성별·연령별: 82.4%가 남성, 75%가 성인남성

<표 21 최근 3년(2020-2022)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은 56명(82.4%)이 남성이었으며 이중 51명(75%)가 성인남성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피해가 젠더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표21 최근3년(2020-2022)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이상)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미상	총계
여	0 (0)	6 (8.8)	1 (1.5)	0 (0)	7 (10.3)
남	1 (1.5)	51 (75.0)	1 (1.5)	3 (4.4)	56 (82.4)
미상	0 (0)	3 (4.4)	0 (0)	2 (2.9)	5 (7.4)
총계	1 (1.5)	60 (88.2)	2 (2.9)	5 (7.4)	68 (100)

2-3. 스토킹 피해 상담 의뢰인별: 피해자 직접 상담 72.1%, 대리인 상담은 26.5%

2022년 스토킹 피해 상담 사례 중 의뢰인별 상담 현황을 보면 피해자가 직접 상담한 경우는 49명(72.1%)이었고, 대리인이 상담한 경우는 18명(26.5%), 대리인과 동반으로 상담한 경우는 1명(1.5%)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본 상담소 전체 상담 중 대리인 상담의 비율은 29.3%인 것에 비해, 스토킹 피해상담은 대리인 상담 비율이 다소 낮고, 본인 상담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스토킹 피해상담을 보면 본인 상담이 30명으로 스토킹 피해 상담 49명 중 61.2%를 차지하였고, 대리인 상담이 18명(6.7%)로 나타났다. 최근3년(2020-2022년)과 비교했을 때, 본인 상담의 비율이 49명(72.1%)에 달하여 1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2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비교

<단위: 명(%)>

년도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동석)	총계
2016	<u>30</u> (61.2)	<u>18</u> (36.7)	1 (2.0)	49 (100)
최근3년 (2020-2022)	<u>49</u> (72.1)	<u>18</u> (26.5)	1 (1.5)	68 (100)

2-4.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 전/현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직장 내 관계, 동네사람 등 여타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도 늘어나

<표23.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 비교>를 보면 2016년 스토킹 피해상담을 보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34명으로 69.3%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 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가 30명(61.2%)으로 압도적인 양상을 보였다. 최근3년(2020-2022) 스토킹 피해 상담에서도 전 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19명(27.9%)으로 가장 많았지만, 현 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도 13명(19.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장 내 관계에 의한 피해는 그보다 더 많은 15명(22.1%)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네사람에 의한 피해도 7명(10.3%)으로 늘어났는데, 전/현 친밀한 관계 외에도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이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016년에 46명(93.8%), 2022년에는 62명(91.2%)으로 나타나 여성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피해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0% 이상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관계 비교

<단위: 명(%)>

유형 년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밀한관계			동호회	동네 사람	주변의 지인	직장	온라인				교육기관
	전 데이트 상대	현 데이트 상대	현 배우자									

2016	46 (93.8)									2	1	49
	34(69.3)			1	1	2	7	0	1			
	30 (61.2)	4 (8.2)	0 (0)	1 (2.0)	1 (2.0)	2 (4.1)	7 (14.3)	0 (0)	1 (2.0)	(4.1)	(2.0)	(100.0)
최근3년 (2020-2022)	62(91.2)									2	4	68
	33(48.5)			1	7	1	15	2	3			
22)	19 (27.9)	13 (19.1)	1 (1/5)	1 (1.5)	7 (10.3)	1 (1.5)	15 (22.1)	2 (2.9)	3 (4.4)	(2.9)	(5.9)	(100)

2-5. 스토킹 피해 시 동반피해 여부: 다른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70.6%. 동반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 협박·위협, 찾아오기, 주변인 괴롭힘 순

<표24. 최근3년(2020-2022) 스토킹 단독/동반 피해 유형>을 보면 최근3년(2020-2022) 전체 스토킹 피해상담 중 스토킹 단독 피해는 20명(29.4%)이고, 스토킹 외에 다른 피해가 동반된 사례는 48명(70.6%)으로 집계되었다. 동반피해는 강간이 22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스토킹 단독피해(29.4%)보다 더 높은 수치로써 강간 피해를 빌미로 스토킹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이에 포함된다. 강간 피해 다음으로 폭행이 12명(17.6%), 강제추행이 8명(11.8%)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등의 피해가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토킹 피해가 단지 한 가지 유형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다양한 양상의 피해를 경험하게 하여 물리적·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미한 범죄로만 다루어 왔던 스토킹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와 함께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최근 3년(2020-2022) 스토킹 단독/동반 피해 유형

<단위: 명(%)>(중복 포함)

피해 유형		
스토킹 단독 피해		20 (29.4)
동반피해 48 (70.6)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포함)	22 (32.4)
	폭행	12 (17.6)
	강제추행	8 (11.8)
	명예훼손	6 (8.8)
	카메라이용촬영	6 (8.8)
	통신매체이용음란	5 (7.4)
	모욕	5 (7.4)
총계		68 (123.6)

2-6. 스토킹 피해 상세 내용

스토킹 피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스토킹 피해 상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 피해 상담 사례 중 31명, 45.6%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뿐 아니라 우편까지 포함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경우였다. 피해자들 중 하루 최대 400통의 전화, 500통의 문자를 수신했다고 호소한 피해자도 있었다.

가해자가 자해나 자살을 암시·실행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동의없이 알리는 아웃팅이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위협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사례는 16명(23.5%)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주시하고, 배회 또는 기다린 사례도 15명(22.1%)나 되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와 상의없이 찾아가거나, 피해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피해자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직접 위협하기도 하며 실제 기물파손을 실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들을 단절하여 고립시킨 경우는 14명(10.6%)이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집착적으로 구애하거나, (다시) 만날 것을 종용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사례는 12명(17.6%)로 나타났다. 온라인의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이용하여 괴롭힌 경우는 11명(16.2%)로 집계되었다. 폭언(7명, 10.3%)과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4명, 5.9%) 외에도 고소위협 혹은 실행(2명, 2.9%), 주거침입(2명, 2.9%)이 확인되었으며, 혈서나 여성의 신체 사진에 정액을 묻혀 우편물을 전달한 경우(2명, 2.9%)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는 기타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례,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허락없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사례, 제대로 된 처방전 없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표 25 스토킹 피해 상세 내용

<단위: 명(%)>(중복 포함)

스토킹 피해 내용	계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문자, 전화, 우편, 카카오톡, 이메일)	31 (45.6)
협박·위협 (자해, 자살, 살해, 아웃팅, 촬영물 유포 등)	16 (23.5)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오기 (감시, 주시, 배회, 기다림)	15 (22.1)
가족·지인 등 주변인 괴롭힘 (단순 연락, 찾아가기, 피해자에 대해 캐묻기, 살해 위협, 기물파손)	14 (10.6)
강요 (집착적 구애, 만남 종용, 성관계 강요)	12 (17.6)
SNS 이용 괴롭힘 (감시, 협박, 게시물 올리기)	11 (16.2)
폭언	7 (10.3)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4 (5.9)

고소 위협 및 실행 (절도, 폭행 등)		2	(2.9)
주거침입 시도		2	(2.9)
우편물 전달 (혈서, 여성 나체 사진에 정액 묻혀 동봉)		2	(2.9)
기타	찾은 신체접촉 시도	1	(1.5)
	서비스 컴플레인	1	(1.5)
	감금	1	(1.5)
	가족과 단절시킴	1	(1.5)
	마주칠 때마다 사진과 영상 촬영	1	(1.5)
	온라인 사이트 아이디 해킹	1	(1.5)
	통신내역 감시	1	(1.5)
	처방없이 투약	1	(1.5)
	업무를 핑계로 끌고다님	1	(1.5)
총계		68	(174)

이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⁶⁾”는 (가) 가까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지 등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바라보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마) 주거지 등 인근에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앞서 표에서 확인했듯이 그 외에도 무수히 다양한 양상으로 스토킹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는 거주지나 가족, 모바일 등 피해자의 사적인 시·공간 외에도 직장, 지인 등 사회적 시·공간, 관계를 넘나들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등 관련된 이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7.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은 1개월 미만부터 5년 이상 최대 15년까지

<표.26 스토킹 피해 기간 비교>를 보면, 2016년 49명의 스토킹 피해 상담 사례 중 1개월 미만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10명(20.4%)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3년(2020-2022) 스토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킹 피해 상담을 보면, 3개월 이상~1년 미만의 피해가 16명(2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14명(20.6%), 1개월 미만이 11명(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최대 15년까지 피해를 겪은 사례도 10명(14.7%)이나 되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이전에는 폭력 피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범칙금 8만원 정도의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어 경찰 신고나 주변의 도움이 피해 중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가해자 처벌도 가능해졌으며, 사회적으로도 스토킹피해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랜시간동안 숨죽인 채로 힘겹게 버텨왔던 많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6 스토킹 피해 기간 비교

<단위: 명(%)>

지속기간 년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미상	총계
2016	10 (20.4)	7 (14.3)	8 (16.3)	8 (16.3)	2 (4.1)	1 (2.0)	13 (26.5)	49 (100.0)
최근3년 (2020-2022)	11 (16.2)	3 (4.4)	16 (23.5)	14 (20.6)	2 (2.9)	10 (14.7)	12 (17.6)	68 (100.0)

2-8. 스토킹 피해 상담 이전 대응 방법

2016년 스토킹 피해 상담 중 63.3%에 이르는 31명은 스토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변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18명, 36.7%)했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한 사례는 7명(14.2%)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3년(2020-2022) 스토킹 피해 상담을 보면 2016년의 비율상 두 배 정도인 48명(70.6%)이 상담 이전에 실질적인 조치와 대응을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법적 대응을 시작(19명, 27.9%)했거나 주변인에 도움을 요청(20, 29.4%)하고, 조직 내 대응을 시도(8명, 11.8%)하는 반면 미조치/미파악은 2016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큰 요인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표 27 스토킹 피해 상담 이전 대응 방법 비교

<단위: 명(%)>(중복 포함)

년도	조치 및 대응	미조치	총계
----	---------	-----	----

	법적 대응	의료적 조치	조직 내 대응	주변인 도움요청	가해자에 사과요구	/미파악	
2016	18(36.7)					31	49
	7 (14.2)	0 (0.0)	0 (0.0)	18 (36.7)	1 (2.0)		
최근3년 (2020-2022)	48(70.6)					20	68
	19 (27.9)	1 (1.5)	8 (11.8)	20 (29.4)	2 (2.9)		

Ⅲ. 결론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고소인의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수사절차로 인해 초기단계에서부터 '불송치'라는 넘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약 2년간 성폭력 사건의 경찰 수사 흐름을 살펴보고자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상담을 세부분석하였다.
-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전체 피해유형 중 강간(52.9%)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 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집중하여 강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된 사례 또한 강간 피해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의 성폭력피해자-가해자 관계는 친밀한관계(29.4%), 직장 및 공동체(26.5%), 지인(17.6%) 순으로,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많았으며, 이중 친밀한관계(29.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밀접한 관계에 놓였던 관계일수록 불송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트폭력의 성격을 띤 성폭력의 경우 보통 기존 관계를 기반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 강간죄는 가해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 아닌 폭행·협박 존재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폭력 사건 고소 후 불송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이 35.3%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경찰수사규칙에 적시된 사항에 비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불송치 처분의 이유로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용이 32.4%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다움의 통념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신빙성 의심으로 이어지는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의심'이 불송치 처분의 이유 중 26.5%를 차지했다. 양쪽의 진술이 상반되고 각자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성을 낮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어서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음' 26.5%를 차지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동반 유무 또는 유형력의 정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현실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합의하에 성적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한 성적동의를 이뤄졌는지 등 다루지는 않고

있는 등의 법적 한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 72.2%가 보완수사명령 결정으로 다시 경찰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1.1%에 불과했다.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이유를 살펴보면 불송치 처분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피해자가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시점과 요청사항은 불송치 처분 후가 44.1%으로 가장 많고, 주로 법률지원을 요청하였다. 법률지원 내용으로는 주로 불복절차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사선변호사 추천 등이다. 불송치 처분은 피해자에게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 과거 스토킹 피해는 범칙금 8만원의 경범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나 권리 보장이 요원했고, 스토킹에서 살인, 폭행,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당시 본 상담소를 포함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본격 시행되어, 스토킹을 폭력피해로 인정받고, 일상을 압도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보도되면서 상담창구를 통해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더욱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의 스토킹 피해 상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 스토킹 피해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피해자·가해자 성별은 여성피해자가 91.2%, 남성가해자가 75.0%를 나타냈다. 스토킹 피해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젠더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 스토킹 피해상담 시 본인 의뢰가 2016년(61.2%) → 최근 3년(72.1%)로 본인의 상담비율이 10%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스토킹 피해 상담에서 전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19명(27.9%)으로 가장 많았지만, 현 데이트상대에 의한 피해도 13명(19.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장 내 관계에 의한 피해는 그보다 더 많은 15명(22.1%)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네사람에 의한 피해도 7명(10.3%)으로 늘어났는데, 전/현 친밀한 관계 외에도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이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스토킹 피해 시 다른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70.6%에 달했으며, 동반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이 22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스토킹 단독피해(29.4%)보다 더 높은 수치로써 강간 피해를 빌미로 스토킹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이에 포함된다. 강간 피해 다음으로 폭행이 12명(17.6%), 강제추행이 8명(11.8%)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등의 피해가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토킹 피해가 단지 한 가지 유형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다양한 양상의 피해를 경험하게 하여 물리적·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스토킹 피해 상세 내용으로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은 45.6%, 협박과 위협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사례는 23.5%,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들을 단절하여 고립시킨 경우는 10.6%를 차지했다. 그 외 피해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집착적으로 구애(17.6%)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이 16.2%로 집계되었고, 제대로 된 처방전 없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사적인 시·공간 외에도 직장, 지인 등 사회적 시·공간, 관계를 넘나들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등 관련된 이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스토킹 피해 지속기간은 2016년엔 1개월 미만(20.4%)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 3년(2020-2022) 스토킹 피해 상담을 보면, 3개월 이상~1년 미만의 피해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20.6%, 1개월 미만이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최대 15년까지 피해를 겪은 사례도 14.7%나 되었다.
- 스토킹 피해 상담 이전 대응 방법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2016년(63.3%) → 최근 3년(70.6%)로 상담 이전에 실질적인 조치와 대응을 한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큰 요인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 스토킹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관련 법제가 자리잡게 된 이유는 젠더 불평등, 사회경제적 상황, 섹슈얼리티 낙인 등의 차별구조가 기반이 되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젠더폭력이 침해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안전권, 생활권, 인격권, 몸과 정체성, 운명결정권 등 삶의 통합성(integrity) 자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실행을 통해 좁은 형사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피해자 임파워링을 적극 실행해야 하며, 폭행협박 없이 자행되는 성적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개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 교육, 홍보를 통한 예방적 조치, 일상적 문화와 규범의 변화라는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실행하는 것이다.